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일본

김해룡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LIMATE CHANGE ISSUES PAPER

Contents+

Ⅰ. 제도 개요 / 2

Ⅱ. 초소형 자동차 활용도 / 3

Ⅲ.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 / 6

1. 초소형 자동차 정의와 운행 가능 요건 / 6
2. 면허 내지 주행 허용요건 / 7
3. 안전기준 완화 및 안정성 향상 요건 / 8
4. 유지비, 보험 관련 / 10

Ⅳ. 초소형 자동차 등록절차 / 11

1. 등록 / 11
2. 등록신청서 및 첨부 자료 / 11
3. 심사 / 12
4. 등록 인정 / 12
5. 등록 인정에 따른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 / 13
6. 운행 보고 / 13
7. 등록의 취소 / 13

Ⅴ. 안전 관리 / 15

1. 지역 특성의 파악 / 15
2.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정 / 16
3. 운전자 및 이용 장소, 이용실적의 구체적 관리 방법 / 17
4. 긴급한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점검체제의 구축 / 18
5. 이용자 안전 교육의 커리큘럼 / 18
6. 지역 특성이나 이용형태에 따른 대책 마련 / 21

Ⅵ. 행정청의 지원 / 22

Ⅶ. 시사점 :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에 응용 / 24

Ⅰ. 제도 개요

≡ 초소형 자동차 활용을 위한 지침

- 지역내 교통의 편리와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하여 대도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의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관광의 활성화 및 고령자, 병약자들의 이동수단 지원과 같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교통성은 2012년 6월(平成24年6月)자로 "초소형 자동차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음

≡ 초소형 자동차 인정 제도

- 이 "초소형 자동차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은 초소형 자동차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행정적 지침이라고 할 것임

- 동 지침(가이드라인)은 초소형 자동차 이용 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기준 제55조 제1항의 교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그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다소 완화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행할 수 없음. ②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서만 운행할 것, ③ 안전과 환경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초소형 자동차의 크기와 성능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기준을 완화함

- 초소형 자동차의 운행은 초소형 자동차 인정 요강에 따라 2013년(平成1 25年) 1월 31일부터 시행함

Ⅱ. 초소형 자동차 활용도

- 2010년부터 2011년(平成 22年–23年)의 기간동안 일본에서 초소형 자동차 활동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동 지침이 작성되었음

- 조사 결과, 일상 생활에서 짧은 거리의 이동, 시내 또는 관광지에서 짧은 거리의 이동에 초소형자동차의 활동도가 높았음

일상생활용

- 근거리(5km 이내)에서 통근과 같은 일상생활용 교통수단으로 이용함

- 특히 좁은 길의 시가지 및 주택지에서 이용도가 높음.

- 자택에서 역이나 주차장까지의 교통수단으로도 이용

관광용

- 자동차보다 협소한 공간에서 이용하고 있음

-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보행자와의 공존이 용이함

상업용

- 기존의 차량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함
- 차량이나 사람이 많은 혼잡한 곳에서의 소규모 운송에 활용되고 있음

구체적인 활용 사례

지방자치단체별 활용 사례(괄호 안은 실증실험 기간)

- 도쿄 치요다 구(千代田区)는 도심의 상업지구에서 소규모 물류 운반에 적극적으로 활용(2010년 10월 17일~2011년 1월 31일)
- 요코하마 시(横浜市)는 도시 중심부에서 일상 생활 및 관광에 활용했으며, 초소형 자동차의 카 쉐어링과 시간제 렌트카를 운영함(2010년 10월 15일~11월 30일)
- 토요타 시(豊田市)는 초소형 자동차보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에 중점을 두어 보행 구간에서 주행을 허용하고 자가용으로 활용하고, 쉐어링 시스템을 도입(2010년 10월 13일~10월 28일)
- 교토 부(京都府)는 자치회에 의한 초소형 전기자동차 공동이용을 운영하고, 카 쉐어링과 지역 순찰에 활용함(2010년 10월 16일~2011년 2월 9일)
- 무나카타 시(宗像市)는 체험주행회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2011년 2월 10일~3월 20일)

- 후쿠오카 시(福岡市)는 대규모 개발 지구에서 맨션 카 쉐어링을 운영하여 초소형 자동차를 보급함(2010년 11월 4일~2011년 2월 19일)
  - 후쿠오카 현(福岡県)은 중산간지(中山間地) 등에서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자가용 또는 카 쉐어링을 운영하여 보급함(2010년 10월 1일~11월 30일)

- 기류 시(桐生市)는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중심지 내에서 렌트카를 운영함(2010년 12월~2011년 1월).

- 다테바야시 시(館林市)는 시가지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으로 활용함(2010년 11월 1일~2011년 1월31일)

- 아오모리현(青森県)은 관광지의 자가용 규제구간(マイカー規制区間)에서 레저 목적으로 렌트카로 운영함(2010년 10월 29일~30일)

Ⅲ.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

1. 초소형 자동차 정의와 운행 가능 요건

- 초소형 자동차 운용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초소형 자동차란 일반 자동차보다 작은 규모의 자동차로서 1–2인 탑승용의 3, 4륜의 차량을 말함. 이는 회전반경이 작고, 친환경적인 것이어서 지역 내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점이 있음[1]

- 초소형자동차는 경형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사이에 초소형 자동차라는 차량 등급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2]

- 일본에서의 초소형 자동차 이용지침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동수단으로는 이륜자동차, 보조바퀴 달린 이륜차, 캐터필러 및 썰매가 부착된 경자동차(견인차는 제외) 등 임(동 지침 제3조)

-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총 배기량이 0.125리터 이하의 것, 내연기관 이외를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격 출력이 8 킬로와트 이하일 것(제3조 제1호)

1 国土交通省都市局·自動車局, 超小型モビリティ導入に向けたガイドライン～新しいモビリティの開發 · 活用を通じた社会生活の実現に向けて～, 国土交通省都市局·自動車局, 平成24年 6月, 2頁.

2 천현정 · 박종준, 『법제 이슈브리프』 2015년 9월호(통권 제06호),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2015. 9., 5면.

- 탑승인원이 2인 이하(2개의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부착한 경우는 3인 이하)의 것(제3조 제2호)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외바퀴의 원형체 이동수단이나, 롤러스케이트 형 이동수단까지 이 소형 자동차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와 같은 소형의 이동수단이 운행자의 자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이든 자체적인 동력으로 이동하는 것인 한해서는 초소형 자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함

2. 면허 내지 주행 허용요건

1) 면허

- 초소형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면허(보통 자동차 면허)가 도구되는데,[3] 이는 초소형의 전기자동차는 주로 농촌의 고령자들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에게 일반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이동수단울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4] 따라서 초소형 전기자동체의 운행에 필요한 약식의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음

2) 주행 요건

-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행할 수 없음.
- 교통안전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장소에서 운행할 것.

3 http://www.cordia.jp/blog/?p=1506.

4 “超小型モビリティで自動車事故多發? 保險料高額?”, http://fireball-japan.org.

- 크기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안전과 환경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도로에서 주행 가능

- 도로법(昭和 27년 법률 제180호) 제48조의 4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자동차국도법(昭和 32년 법률789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속자동차국도 및 도로교통법(昭和 35년 법률 제105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속도가 60km/h를 넘는 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주행하는 것(제3조 제3호)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교통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제3조 제4호)

3. 안전기준 완화 및 안정성 향상 요건

1) 초소형 자동차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기준 등의 완화

-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교통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행한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도록 허용함

- 초소형 자동차의 안정 기준 완화

  ① 좌석 부착 강도 및 충격 흡수(보안기준 제22조 제3항, 제4항), ② 안전벨트 부착 강도 및 시트벨트 경고 등(제22조의3 제2항, 제5항), ③ 좌석공간 및 좌석 길이(제22조 제1항, 제2항), ④ 연소자용 보조 승차장치(ISO-FIX 등의 일부 기준)(제22조의5)에 관한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 적용함(단, 안전벨트 장착 의무는 완화대상이 아님)

- 차폭 1300mm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① 탄화기 관계(제32조-제41조의5), ② 원동기(2중 액셀 리턴 스프링)(제8조 제3항),

③ 주행장치(경합금제 호일의 성능)(세목 고시(細目 告示) 제89조 제3항), ④ 잠금장치(제11조의2, 세목 고시 제92조 제3항), ⑤ 제동장치(세목 고시 제93조 제2항, 제3항), ⑥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제20조 제4항), ⑦ 승강구의 전락 방지장치 장비(제25조 제3항), ⑧ 문의 개방 방지(제25조 제4항), ⑨ 전면 유리 강도(제2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미니카(원동기 부착 사륜 자동차)사고의 실태(속도 30km/h 이하에서는 사망 사고가 극히 희소한다는 점)에 비추어, 최고 속도가 30km/h 이하로 지정된 도로에서의 주행하는 경우에 ① 인스투르먼트 패널의 충격흡수(제20조 제5항), ② 안전벨트 장비 및 강도(제22조의3 제1항), ③ 앞좌석 헤드레스트 장비(제22조의4), ④ 선 바이저의 충격흡수(제45조 제3항)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충돌시험 면제

- ① 핸들의 충격흡수(보안기준 제11조 제2항), ② 연료장치의 연료누수방지(제15조 제2항), ③ 충돌 후 발생되는 고압으로부터 보호(제17조의2 제4항), ④ 충돌시 탑승자 보호 및 보행자 보호(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보안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량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보안기준 제1조의 3에 기초하여 충돌시험을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차량의 구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한정되며 충돌안전기준까지 면제하지는 아니함

2) 안정성 향상을 위한 요건

- 초소형 자동차 기준완화 항목 속에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보행자 등에게 당해 차량의 접근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부착할 것을 의무화함

- 차량의 전후면에 각각의 기준완화 마크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

- 운전자에 대하여 속도경보장치, 충돌경보 등 사고 방지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을 장려

4. 유지비, 보험 관련

- 일본에서는 현재로서는 초소형 차량의 구매나 보유 등과 관련하여 세금의 감면, 유지비의 보조, 보험과 관련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초소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량세 등의 감면, 보험료나 정기 점검기간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5]

5 “1~2人乗りの新規格自動車　「超小型モビリティー」2015年にもデビュー”, Jcast ニュース., 2013. 1. 5.

Ⅳ. 초소형 자동차 등록절차

1. 등록

- 초소형 자동차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초소협자동차 협의회의 장(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이 보안기준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함 (초소형자동차 이용지침 제4조 제1항)

-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등록신청을 수리할 때에 ① 초소형 자동차의 구조, 장비 및 성능의 개요, ② 보안기준의 조항 및 조건에 관한 내용 ③ 운행계획(운행지역 및 운행시간, 사용자 관리, 운전자 교육, 초소형 자동차 점검 및 정비, 운행상 안전대책) ④ 기타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함.(제4조 제2항)

2. 등록신청서 및 첨부 자료

- 등록신청서 및 첨부 자료는 보안기준 제55조 제 3항–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운수국장에게 제출함. 사용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 또는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심사

-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보안상 또는 공해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운행조건이나 제한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① 초소형 자동자 이용지침 제3조에 규정된 자동차 구조 ② 보안기준의 준수 여부 ③ 운행의 계획 등을 심사함(제6조 제1항)

- 초소형 자동차가 다른 지방운수국의 관할지역에서도 운행될 경우에는 당해 운행지역에서의 운행상 안전대책 등의 심사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제6조 제2항)

-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등록 심사에 있어서 도로관리자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제6조 제3항)

4. 등록 인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이용지침 제 6조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보안상, 공해방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초소형 자동차 등록서를 교부함(제7조 제1항)

- 지방운수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서를 교부할 때, 초소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본거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 등의 장 및 경자동차 검사협회의 장에 대하여 등록서의 사본을 송부함(제7조 제2항)

5. 등록 인정에 따른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

-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등록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기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 2에서 정하는 기준완화 항목란에 열거된 조항마다 필요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일 수 있음(제8조)

6. 운행 보고

- 초소형 자동차 등록신청자는 매년 별첨 4에서 열거한 보고서양식에 따라 지방운수국장에게 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함(제10조 제1항)

- 운행 보고에 관하여 제9조에 의한 초소형 자동차 인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인정을 받은 기간 내의 운행 실적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제3항).

7. 등록의 취소

-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가 ① 인정서 조건 또는 제한에 위반할 우려 또는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로운송차량법에 비추어 적절한 운행을 하지 못할 우려나 적절한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소형자동차 등록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고케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 지방운수국장은 제9조 제1항의 운행 보고가 없거나 보고내용이 부실하거나 사고재발 방지책이 적절하게 강구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안기준 제55조 제6항및 행정절차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해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제9조 제2항)

- 신청자는 초소형 자동차가 ① 당해 초소형 자동차가 멸실 또는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는 제외) 또는 용도를 폐지한 경우, ② 당해 초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상 또는 공해방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개조 또는 해제(정비를 위한 부가 또는 해제는 제외)한 경우, ③ 당해 초소형 자동차 사용의 본거지의 변경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운수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운수국장은 이 경우 동 등록을 취소함

- 제2항의 취소처분을 받은 초소형 자동차의 소유자가 새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다른 초소형 자동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실적을 제출하여야함(제9조 제5항)

Ⅴ. 안전 관리

- 초소형 자동차 운행 지침은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① 지역의 교통상황의 특성 파악, ② 관련 기관과의 조정, ③ 운전자 및 이용 장소, 이용상태의 구체적 관리 방법, ④ 긴급 상황 발생시 교통의 연결체제와 안전점검 실시체제의 구축, ⑤ 이용자 안전 교육과정의 구축, ⑥ 지역 특성이나 이용형태에 따른 대응 등에 대한 여러 유형을 소개하고 있음.[6]

1. 지역 특성의 파악

- 초소형 자동차가 산간이나 구릉지 언덕길 또는 협소한 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에서는 대형차와의 같이 주행한다는 점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사정, 도로사정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사이타마 시(さいたま市)에서는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ITARDA)로 부터 국도(國道)나 현도 등의 간선도로를 포함한 초소형 자동차운행지역 내 사고다발지점의 정보를 받아 초소형 자동차 운행상 안정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이를 초소형 자동차운행 매뉴얼에 반영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6 国土交通省都市局 · 自動車局, “超小型モビリティ運行の手引き書–参考事例集”, 国土交通省都市局 · 自動車局, 平成 26年度.

- 아쓰기 시(厚木市)에서는 구릉지가 많은 운행지역에서 도로 폭이 좁은 곳이나 언덕길 등 교통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상의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특히 운행상 주의를 요하는 지점에 관한 지도”를 작성하여 초소형자동차 운전자에게 배포하고 있음

2.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정

- 초소형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 초소형 그 운행이 금지된 곳에 진입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 등 초소형 자동차 운행 상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 기관간의 업무상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이타마 시(さいたま市)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서 오는 위험(예를 들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급정지 등)이나 구조 작업시의 주의사항, 사고차의 운반 방법 등을 담은 “레스큐 매뉴얼”을 작성하여 경찰서, 소방서, 수리업체인 JAF에 배포하고, 소방서와 JAF의 실무요원들에게 사고에의 대처요령과 사고 차량의 견인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또한 긴급 시에 각 관계기관들이 담당할 조치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고보고,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세 시(伊勢市) 등에서는 시정촌(市町村)의 홈페이지나 광고지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초소형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요코하마 시(横浜市)에서는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을 때의 대응메뉴얼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음

표_01 초소형 자동차가 요코하마 시의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하였을 때의 대응 사례

- 우회전해야 하는 교차점을 착각하여 고속도로 유도 도로에 잘못 진입한 것을 운전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경고체계를 구축함.
- 운전자는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완전 정지한 뒤 고속도로 운영사무국에 연락함.
- 고속도로 운영사무국은 가장 근접한 위치에 배치된 현장직원을 현장으로 급히 파견.
-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은 일정 절차에 따라 지역 경찰에게 유도 도로 진입로의 일시 봉쇄를 의뢰하고, 당해 차량을 일반도로로 복귀시킴.

3. 운전자 및 이용 장소, 이용실적의 구체적 관리 방법

- 초소형 자동차 사용자는 차량의 이용 상황이나 운행실적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할 책임이 있음

- 요코하마 시(横浜市) 등에서는 운전자가 주행가능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지급된 스마트폰이나 차량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경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즉 초소형 차량의 위치 정보를 관리자가 인터넷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잔량이 25%이하인 경우에는 시 운수사무국에서 관리 단말기를 통해 경고하도록 함

- 이세 시(伊勢市) 등에서는 대여한 소형자동차가 주행가능 지역을 벗어난 경우 지역경찰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게 하면서 해당 운전자에게는 차량 반환시 사후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GPS 단말의 주행 이력이나 차량의 급감속 등을 분석하여 운행상 주의할 지점을 확인하거나 그 지점을 재지정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4. 긴급한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점검체제의 구축

- 초소형 자동자의 사고나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나 동승자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관계기관과의 연락 대응 체제의 구축이 중요함. 또한 운전자가 차량의 점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초소형차량의 구조와 차량점검에 관항 운전자 교육 과정의 구축이 요구됨

- 사이타마 시(さいたま市)에서는 초소형 자동차 사고에 운전자가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나 고장 시 1차 대응과 2차 대응으로 분류하여, 관계기관들의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운전자 교육과정에 초소형 자동차 점검방법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5. 이용자 안전 교육의 커리큘럼

- 초소형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운행 조건 및 제한, 차량의 특성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전과 지역의 교통사정, 이용 형태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함

- 초소형 자동자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강습은 이론 강습과 주행 강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도표와 같음

표_ 02 초소형 자동자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강습

	이론강습	주행강습
목적	주행시 금지사항, 유의사항, 운행지역, 주의할 지점 등에 대한 이해	기초적인 운전방법, 차량 특성 등에 대한 체험과 습득
이해 및 습득 내용	1. 주행가능한 지역과 운행조건(고속도로는 주행 불가 등) 2. 초소형 자동차에 한하지 않고 사고다발지역이나 사고발생 사유 3. 초소형 자동자는 주행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초소형 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4.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대처방법과 일상점검 방법 등	1. 작은 회전반경으로 회전성이 좋은 점 2. 차량이 소형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나 버스, 대형 트럭 등이 소형차량이 운행 중에 있음을 인식하기 쉽지 않은 점 3. 파워 스티어링 등이 부재하여 핸들의 무게나 브레이크의 작동이 일반 차량과 다른 점 4. 사이드 미러 만으로 후방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차량과 다른 점 등
방법	책자를 교재로 하거나, DVD 시청 등	•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운행환경에서 행해짐. • 운행체험이 실제 교통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도로에서 시행되는 케이스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무위탁업체의 직원, 차량 소유자 등이 안전교육강사로 활용됨

- 안전교육 빈도나 교육시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교육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① 초소형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행하고, 그 수강 인원은 약 15명 정도로 하는 사례(아쓰기 시(厚木市), ② 카 쉐어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와 주행연습을 희망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매달 2회의 강습일을 정하고, 한 강좌당 정원을 3명으로 하여 하루 3회 실시하는 사례(토요타 시(豊田市)), ③ 대규모 카 쉐어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강좌당 4명의 정원으로 하루에 4회 실시한 사례(요코하마 시(横浜市))를 들 수 있음

- 요코하마 시(横浜市)는 사고 발생 장소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교육함. 초소형 자동자가 우회전하는 경우에 너무 소형이어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직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좌회전 방향의 주행루트를 위주로 운행코스를 설정하고, 교차로에서 안전 확인을 위한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한 운행경로를 정함

  또한 1인승의 경우와 2인승의 경우에 인식할 속도감(2인승인 경우 1인승용보다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속력은 떨어짐)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뒷좌석에 운전교육 강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음. 강습 방법으로 내용의 일부는 DVD로 시청하도록 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사이타마 시(さいたま市)는 카 쉐어링 사업에 초소형 자동차를 활용하고 있음. 교육은 초소형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절차, 주행할 수 있는 지역, 차량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방법을 가르침. 교육 기간 중에 기초적인 항목과 안전상 중요한 항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강사가 수강자들에게 체크 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음

- 이세 시(伊勢市)는 안전 교육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수강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함. 수료증 뒤에는 운행지역이나 운전 방법 등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모든 이용자가 초소형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항상 주의사항을 의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돗토리현 지즈정(鳥取縣 智頭町)과 토요타 시(豊田市)는 관광객을 운전자로 하는 카 쉐어링 사업이 활발함. 관광객은 체재기간이 짧아 초소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교육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재를 미리 유튜브(YouTube)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에서는 교재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중요한 항목을 요약하여 설명해줌으로써 교육시간을 단축함

6. 지역 특성이나 이용형태에 따른 대책 마련

-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나 사고발생 지역이 어느 곳인지 운전자들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 및 활용 형태에 따른 안전 대책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 차량처럼 백미러가 없기 때문에, 초소형 자동차에 맞는 이용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코하마 시(横浜市)는 사고 발생 장소나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고속도로에 관한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초소형 자동차 이용자와 정보를 공유함

- 사이타마 시(さいたま市)와 토요타 시(豊田市)는 초소형 자동차를 이용할 때 사이드 미러 만으로 후방을 확인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를 할 때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함. 또한 야간에 주차를 해야 할 때나 어두운 주차장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전자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펜스 등에 형광탭을 설치함. 또한 일반 차량이 초소형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주차 공간임을 알리는 표시인 주차봉을 설치함

Ⅵ. 행정청의 지원

- 초소형 자동차 도입을 위한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초소형 자동차를 도입하고 보급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열거하고 있음

차량 보급 지원

-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 상공회나 자치회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량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초소형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공용 차량으로 초소형 자동차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주행 공간 확보

- 초소형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초소형 자동차의 주행 공간을 확보함

- 초소형 자동차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협소한 길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와의 접촉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 표시 등을 설치함

주차 공간, 충전시설 정비

- 상점가나 공공시설 등에서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정비

-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초소형 자동차의 목적지, 경로와 같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충전시설을 정비할 때 드는 비용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

- 지하철역, 주차장(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과 연계된 주차장),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초소형 자동차 쉐어링 시설을 마련함

- 쉐어링 시스템은 민간의 쉐어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데 공적인 보조금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Ⅶ. 시사점 :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에 응용

- 현재 한국은 퍼스널 모빌리티(세그웨이 등 1인용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함. 일본의 초소형 자동차 등록 제도는 비록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요건, 절차 및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법제화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함

주행 공간

-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공간을 정비해야 함.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전용 주행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과 비용, 특히 공간 확보 측면에서 실현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존의 주행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도로(고속도로 포함)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안전 관리

- 퍼스널 모빌리티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에 알람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인도를 주행할 때에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에게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안전 교육은 보호 장비 착용, 주행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음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 및 행정적 지원

- 근거리를 이동하거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구매하여 대여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문헌

천현정 · 박종준, 『법제이슈브리프』 2015년 9월호(통권 제06호),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2015. 9.

国土交通省都市局 · 自動車局, 超小型モビリティ導入に向けたガイドライン~新しいモビリティの開發 · 活用を通じた社会生活の実現に向けて~, 国土交通省都市局 · 自動車局, 平成24年 6月.

国土交通省都市局 · 自動車局, "超小型モビリティ運行の手引き書-参考事例集", 国土交通省都市局 · 自動車局, 平成 26年度.

http://www.cordia.jp/blog/?p=1506.

"超小型モビリティで自動車事故多發? 保險料高額!?", http://fireball-japan.org.

부 록

초소형 자동차 등록 요령(要領)

제1조(적용)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昭和 26年 운수성 제79호 운수성령(運輸省令) 제67호. 이하 「보안기준」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성대신 고시 내용을 규정한 고시」(平成15年 국토교통성 고시 제1320호. 이하 완화고시라고 부른다) 제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하 초소형 자동차 등록이라 부른다)은 본 요령에 의거한다.

제2조(목적) 저출산·고령화, 환경의식 향상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를 공공도로에서 주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는 그 구조와 활용이 일반 차량과 다르고, 교통수단으로써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능 등에 관한 보안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경차의 기준을 만족하고 안정성 확보 및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초소형 자동차의 공공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소형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한다.

또한 초소형 자동차는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급에 있어서 차량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우선이고, 초소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조(초소형 자동차 등록 대상) 초소형 자동차 등록은 다음에 열거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자동차(이륜자동차, 보조바퀴 달린 이륜차, 캐터필러 및 썰매가 있는 경자동차, 견인차는 제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총 배기량이 0.125리터 이하의 것, 내연기관 이외를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 출력이 8 킬로와트 이하일 것.
2. 탑승인원이 2인 이하(2개의 연소자용 보조시트를 붙인 경우 3인 이하)의 것.
3. 도로법(昭和 27년 법률 제180호) 제48조의4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자동차국도법(昭和 32년 법률789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도 및 도로교통법(昭和 35년 법률 제105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 중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60km/h를 넘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주행하는 것.
4. 주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협의회가 교통 안전과 원활한 도로사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것.

제4조(신청자 등) ① 초소형 자동차 등록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협의회의 장(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이 보안기준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다.

② 지방운수국장은 신청서를 수리할 때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초소형 자동차의 구조, 장비 및 성능의 개요
2. 등록에 의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보안기준의 조항 및 조건 또는 제한에 관한 내용
3. 운행의 실시체제(운행지역 및 운행계획, 사용자 관리, 운전자 교육, 초소형 자동차 점검 및 정비, 운행상 안전 대책)
4. 기타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신청서 및 첨부 자료) 신청서 및 첨부 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안기준 제5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신청자는 제1호 양식의 신청서에 별첨 1에서 열거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본 1통 및 부본 1통을 당해 등록에 관한 초소형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에게 제출한다. 단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수지국 또는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이하 "운수지국 등"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신청할 때에는 정본 1통 및 부본 2통을 제출한다.
2. 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 동일한 신청자가 복수의 초소형 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중복되는 첨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3. 초소형 자동차를 등록한 자에 관하여, 그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등록된 초소형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 또는 운행지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된 지역의 관할 지방운수국장에게 당해 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제2호 양식의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운수국장은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등에 관하여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수국장 등의 경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등) ①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보안상 또는 공해방지상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하여 초소형 자동차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가지고 심사한다.

1. 초소형 자동차 구조 등이 제3조에서 말하는 것일 것
2. 초소형 자동차의 구조 등의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보안기준의 조항
3. 별첨 2에서 열거하는 조건 또는 제한
4. 운행의 실시체제(멸첨1의 분류3)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초소형 자동차가 다른 지방운수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도 운행되는 경우에는 운행지역 및 운행상 안전대책 등의 심사를 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운수

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운수국장은 제1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자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7조 (등록) ① 지방운수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안기준 제55조 제1항 및 완화고시 제1조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 별첨 2에서 정한 기준완화항목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보안상 및 공해방지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8조의 조건 및 제한 내에서 초소형 자동차를 등록을 인정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제3호 양식의 초소형 자동차 등록 인정서(이하 "등록 인정서"라고 한다)를 교부한다.

② 지방운수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인정서를 교부할 때, 즉시 당해 등록 인정서의 초소형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수지국 등의 장(지방운수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경자동차 검사협회의 장(사무소장, 사무소 지소장 및 사무소 분실장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하여 등록 인정서의 사본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할 것과, 제4호 양식을 작성할 때 별첨 3에서 열거한 조건과 제한 중 자동차검사증 비고란에 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한다.

③ 지방운수국장은 제6조에 기초하여 심사한 결과, 부가 조건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초소형 자동차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기준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운수국장은 등록을 거부하는 이유를 붙여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인정의 초소형 자동차를 주요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수지국 등의 장(지방운수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경자동차 검사협회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8조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기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별첨 2에서 정하는 기준완화 항목란에 열거된 조항마다 필요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인다. 또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행정처분 등) ① 지방운수국장은 초소형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보고를 요구하고, 또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개선 보고를 요구한다.

1. 등록 인정서 조건 또는 제한을 위반할 우려 또는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로운송차량법에 비추어 적절한 운행을 하지 못할 우려나 적절한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운수국장은 신청자가 전 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보고가 있었던 재발방지책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안기준 제55조 제6

항의 규정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 사용자에게 행정절차법(平成 5年 11月 12日 법률 제88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취를 하고, 당해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청자는 초소형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호 양식을 사용하여 초소형 자동차마다(복수의 초소형 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신청 자동차의 번호) 지방운수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운수국장은 보안기준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당해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취소한다.

1. 당해 초소형 자동차를 멸실 또는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는 제외) 또는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당해 초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상 또는 공해방지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조, 장치의 부가 또는 해제(정비를 위한 부가 또는 해제는 제외)한 경우
3. 당해 초소형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 등록을 한 지방운수국의 관할 밖일 경우

④ 지방운수국장은 전항의 초소형 자동차 등록 취소 신청 후, 당해 등록 인정서에 기재된 취소 신청된 초소형 자동차 이외의 초소형 자동차가 운행될 경우, 신청자에게 이미 교부된 등록 인정서를 반환하도록 하고, 당해 인정서 중 "4 차량 번호"(또는 제조 번호)의 항목을 수정하여 다시 교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등록된 초소형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수지국장 및 경자동차 검사협회의 장에 대하여 등록 인정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 지방운수국장은 제2항의 취소처분을 받은 초소형 자동차의 신청자가 새로 신청을 한 경우, 보안기준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당해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다른 초소형 자동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실적을 요구한다.

⑥ 지방운수국장은 본 요령에 규정된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100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보고, 청취 또는 검사,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로부터의 통지 등을 통하여, 초소형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지방운수국장은 전 항의 운행 상황의 파악에 관하여 운수지국 등의 장 및 다른 지방운수국장(단, 초소형 자동차가 다른 지방운수국이 관할하는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 한한다)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운행의 보고) ① 신청자는 매년도, 지방운수국장에게 운행 결과에 관한 보고를 별첨 4에서 열거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첨 4에서 열거한 운행 실적표의 각 항목이 포함된 기존의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4의 운행실적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보안기준 및 관계기준의 개선, 책정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운수국장을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구조 또는 장비와 같은 기술에 관한 자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에 관하여 제9조에 의한 초소형 자동차 등록이 실효된 경우에도 등록을 받은 기간 내의 운행 실적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적용시기) 이 등록 요령은 平成25年 1月 31日 이후의 초소형 자동차 등록의 신청부터 적용된다.

별첨 1 첨부자료 (제5조 관련)

유형	자료의 종류	내용
1. 초소형 자동차 구조 등에 관한 것	1. 제원표(諸元表) 2. 구조 · 장치의 개요 3. 외관도 4. 원동기의 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을 증명하는 자료 5. 운전자석 부근 배치도 6. 다음에 열거하는 장치 도면 ① 창틀 전체 도면(차 테두리 또는 차체) ② 원동기 전체 ③ 동력 전달 장치 ④ 주행장치 ⑤ 조종장치 ⑥ 제동장치 ⑦ 완충장치 ⑧ 연료장치 ⑨ 탄화장치	자료 종류 1부터 6까지는 다음에 열거된 것 중 하나의 자료일 것. 1. 「개조 자동차 등의 취급에 대하여」(平成 7年 11月 21日자, 自技 제239호)에 기초한 「시작(試作) · 조립 자동차 심사 결과 통지서」 및 첨부자료. 2. 「자동차 형식 인증 실시 요령에 관하여」(平成 10年 11月 12日자, 自審 제1252호의3) 별첨 「자동차 형식 인증 실시 요령」 별첨 1의 별표에 준하는 자료. 3. 「병행수입 자동차 취급 요령에 관하여」(平成 9年 3月 31日자, 自技 제61호)에 기초하여 제출한 것인 계출서 및 첨부자료.
2. 기준 완화에 관한 것	1. 서약서	등록 거부 조건, 보안상 및 공해방지상의 제한을 준수할 것과 사용자에게 미리 알렸음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참고에 의한 서식)
	2. 보안상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별첨 2의 기준완화가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각 기준완화 항목에 붙인 조건 또는 제한이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안기준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
3. 운행의 실시체제에 관한 것	1. 운행지역 및 운행계획	다음에서 열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것. 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최고속도 60km/h를 넘는 도로가 아닌 장소(단, 보안기준 제20조 제5항, 제22조의3 제1항 및 제3항, 제22조의4 및 제45조 제3항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주로 최고속도 30km/h 이하의 도로로 한다)임을 나타내는 자료. 2. 초소형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자료 3. 초소형 자동차의 구체적인 이용 및 활용 상황을 예상한 운행 계획 자료
	2. 사용자 관리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진 것이 확인 가능한 자료일 것. 1. 사용자가 특정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2. 초소형 자동차의 사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유형	자료의 종류	내용
3. 운행의 실시체제에 관한 것	3. 운전자 교육	다음에서 열거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 자료일 것. 1. 특수한 자동차인 것을 충분하게 인지시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2. 초소형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는 등록 때 붙인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하도록 할 것. 3. 운행시 초소형 자동차 등록 인정서 사본을 초소형 자동차에 부착한 것. 4.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5, 사고 또는 고장 발생 등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6. 초소형 자동차 점검 및 정비의 실시 방법 등.
	4. 초소형 자동차 점검 · 정비	다음에 열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것. • 일상점검 • 정기점검 • 점검, 정비방식 (자동차점검기준에서 검정하고 있는 일상점검기준 항목 및 정기점검기준 항목 이외에 실시하여야 할 특별 점검 · 정비항목, 판정기준 및 교환시기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5. 기타(운행상 안전대책)	운행상의 안전대책으로 이하의 예를 생각할 수 있음. • 주행시간의 제한, 감시원의 배치 • GPS를 탑재하여 운행을 기록(관리)함. • 초소형 자동차의 운행지역의 지역 주민에게 광고나 안전운전 강습회 실시와 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등 지역 실태에 맞춘 안전대책.
4. 보고에 관한 것	고장, 사고, 개선대책, 정기 보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것. 1. 사고 및 고장 발생시 등에 관한 보고는 사용자로부터 관계 행정기관 등이 확실한 실시 체제를 갖출 것. 2. 상기 1.에 대한 개선조치에 관한 보고는 당해 등록을 인정한 지방운수국장에 대하여 확실하게 실시될 체제가 정비될 것. 3. 당해 등록을 인정한 지방운수국장에 대한 운행결과 보고는 매년도말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비고
(1) 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격 A례 4번으로 한다. 단,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나눠서 기재한 용지의 합이 일본공업규격 A례 4번으로 한다.
(2) 정격 출력의 시험방법은, 「독립행정법인교통안전환경연구소 심사사무규정(平成13年 4月 1日 연구소 규정 제2호) TRIAS99-018-01」에 준한 시험으로 한다.

별첨 2. 기준완화 항목 및 조건 또는 제한(제6조, 제7조 관련)

대상(번호)	기준완화 항목	조건 또는 제한(번호)
모든 초소형 자동차		1. 운행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엄수할 것.(092) 2. 운행에 있어서 인정서(사본)을 휴대할 것.(093) 3. 주행 중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노력할 것. (148) 4. 고속자동차국도 등을 운행하지 않을 것.(077) 5. 운행의 실시체제를 준수할 것.(별첨 1의 유형 3 전부와 관련된 것) 6. 자동차 전면 및 후면에는 시행규칙 제19호 양식에 의한 표식을 표시할 것. 7. 승차 정원 2인 이하의 자동차(단 운전자석 이외의 좌석에 연소자용 보조승차 장치를 고정 또는 탈착식으로 2개 구비한 때에는 승차 정원이 3인 이하의 자동차)일 것. 8. 전기자동차 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작은 엔진 소리으로 인한 안전 대책 지침에 관하여」(平成 22年 1月 29日자 國自技 제255호)에 준한 작은 엔진 소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원동기 또는 원동 전달 장치 【2중 액셀 리턴 스프링 관련】	보안기준 제8조 제3항(해제 장치의 숫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주행장치 【경합금제 디스크 호일 관계】	세목 고시(細目 告示) 제89조 제3항, 제167조 제3항	1.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2. 세목 고시 별첨 2 「II 이륜자동차용 경합금제 디스크 호일의 기술기준」 (4.1.(1)을 제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잠금장치 【이모빌라이저 관계】	세목 고시 제92조 제3항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제동장치 【세목 고시 별첨 10 「트럭 및 버스 제동장치의 기술 기준」 관계 및 세목고시 별첨 12 「승용차 제도장치 기술 기준」 관계】	세목 고시 제93조 제2항 각호 열기(列記) 이외의 부분, 제9호 및 제12호, 제3항 각호 열기(列記) 이외의 부분, 제2호(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기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호, 제7호 제171조 제2항 제9호, 제12호, 제3항 제2호(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기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호 및 제7호	1.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2. 이하의 각호에 규정된 것 중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세목 고시 제9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 기준 (2) 유럽연합 지침 93/4EEC의 기술적 요건 (3) 세목 고시 별첨 98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제동장치의 기술 기준」

대상(번호)	기준완화 항목	조건 또는 제한(번호)
차 테두리 및 차체 【측면 충돌시 탑승자의 보호 관계】	세목 고시 제100조 제13항	자동차 측면(운전자 좌석 또는 운전자 좌석과 병렬로 설치된 좌석 부근)에 충격완화 장치가 있고, 차체 구조도면 등에 의하여 충격완화 장치가 확인될 것.
승차 장치	보안기준 제20조 제4항 (난연성(難燃性) 관계)	
	보안기준 제20조 제5항 (인스트루먼트 패널 충돌 흡수 관계)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좌석(021, 022) 【좌석 공간, 길이, 부착 강도 및 좌석 후면의 충격 흡수 관계】	보안기준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당해 좌석의 전방은 당해 자동차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좌석의 탑승자가 머리 등에 과도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적은 구조일 것.
안전벨트(023)	보안기준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안전벨트 장비 및 요건 관계)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보안기준 제22조의3 제2항 및 제4항(안전벨트 부착 및 경고 관계)	당해 좌석의 전방은 당해 자동차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좌석의 탑승자가 머리 등에 과도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적은 구조일 것.
후두부(後頭部) 억압 방지 장치 등(025)	보안기준 제22조의4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위의 조건 이외의 자동차는 운행 속도가 30km/h 이상 60km/h 이하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후두부 억압 방지 장치를 세목 고시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첨 34 「후두부 억압 방지 장치의 기술 기준」 완화에 한함.
연소자용 보조승차 장치 【ISOFIX】	보안기준 제22조의5 제1항	
승강구 【차문 미 차문 개방 장치】	보안기준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유리창(027) 【유리창의 강도 등】	보안기준 제29조 제2항	
전조등 【부착 개수 관계】	세목 고시 제120조 제3항 제1호, 제7항 제1호 및 제198조 제3항 제1호, 제7항 제1호	1.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2. 왼쪽 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

대상(번호)	기준완화 항목	조건 또는 제한(번호)
차폭등(030) 【부착 개수 관계】	세목 고시 제123조 제1항 및 제3호 및 제201조 제1항 제3호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미등 【부착 개수 관계】	보안기준 제37조 제1항 세목 고시 제128조 제1항 제3호 및 제206조 제1항 제3호	1.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2. 왼쪽 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제동등(037) 【부착 개수 관계】	보안기준 제39조 제1항 세목 고시 제134조 제1항 제4호 및 제212조 제1항 제4호	1.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2. 왼쪽 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
보조제동등 【장비 요건 등】	보안기준 제39조의2 제1항 세목 고시 제135조 제1항 제2호 및 제2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후퇴등 【장비 요건 등】	보안기준 제40조 제1항	1.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2. 자동차가 후진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와이퍼 등 【햇빛 가리개】	보안기준 제45조 제3항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방향지시기(039) 【측면 방향지시기의 장비 요건 등】	세목 고시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표의ㅁ,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3호 및 제215조 제1항 제1호 제1표의ㅁ,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3호	1. 자동차의 길이는 2.50미터 이하일 것. 2.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3. 왼쪽 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
기타 항목		기타 운행에 있어서 지방운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첨 2】

비고

(1) 고속자동차국도 등이라 함은 도로법(昭和 27년 법률 제180호) 제48조의4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자동차국도법(昭和 32년 법률789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도 및 도로교통법(昭和 35년 법률 제105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 중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60km/h를 넘는 도로를 말함.

(2) 시행규칙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昭和 26年 8月 16日 운수성령 74호)를 말함.

(3) 세목 고시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平成 14年 7月 15日 국토교통성 고시 제619호)를 말함.

(4) 「번호」라 함은 「자동차등록 파일의 등록사항 및 검사기록사항, 경차 조사 파일의 검사기록 사항 및 이륜자동차 검사 파일의 검사기록 사항의 넘버링에 관한 고시」(平成 16年 국토교통성 고시 제1600호) 제1조 제8호 및 제9조에서 규정하는 번호로, 참고사항으로 부기함(이하, 별첨 3에서도 같다).

(5) 기타 별첨 2의 표에서 열거한 조건 및 제한 이외에, 초소형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속도경보 장치, 충돌 경보 등, 사고 방지에 관한 장치의 장비를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별첨 3】 보안상의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제7조, 제8조 관계)

대상(번호)	조건 또는 제한(번호)
모든 초소형 자동차	• 운행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엄수할 것.(092) • 운행에 있어서 등록 인정서(사본)을 휴대할 것.(093) • 주행 중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노력할 것.(148) •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지 않을 것.(077) • 운행의 실시 체제를 준수할 것. • 자동차 전면 및 후면에는 시행규칙 제19호 양식에 의한 표식을 표시할 것. • 승차 정원이 2인 이하일 것. • 승차 정원 2이 이하의 자동차일 것.(단 운전자석 이외의 좌석에 연소자용 보조승차 장치를 고정 또는 탈착식으로 2개 구비한 때에는 승차 정원이 3인 이하일 것) • 작은 엔진 소리에 대한 대책으로써 차량 접근 통보 장치를 장비할 것.
원동기 또는 원동 전달 장치 【2중 액셀 리턴 스프링 관련】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주행장치 【경합금제 디스크 호일 관계】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세목 고시 별첨 2 「II 이륜자동차용 경합금제 디스크 호일의 기술기준」 (4.1.(1)을 제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잠금장치 【이모빌라이저 관계】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제동장치 【세목 고시 별첨 10 「트럭 및 버스 제동장치의 기술 기준」 관계 및 세목고시 별첨 12 「승용차 제도장치 기술 기준」 관계】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세목 고시 제9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 기준에 적합할 것. • 유럽연합 지침 93/4EEC의 기술적 요건에 적합할 것 • 세목 고시 별첨 98 「원동기 부착 자동차의 제동장치의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차 테두리 및 차체 【측면 충돌시 탑승자의 보호 관계】	자동차 측면에 충격 완화 장치가 있을 것.
승차 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좌석(021, 022) 【좌석 공간, 길이, 부착 강도 및 좌석 후면의 충격 흡수 관계】	당해 좌석의 전방은 당해 자동차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한 경우, 당해 좌석의 탑승자가 머리 등에 과도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적은 구조일 것.
안전벨트(023)	•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대상(번호)	조건 또는 제한(번호)
	• 당해 좌석의 전방은 당해 자동차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좌석의 탑승자가 머리 등에 과도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적은 구조일 것.
후두부(後頭部) 억압 방지 장치 등 (025)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전조등 【부착 개수 관계】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보안기준 제37조 제1항, 세목 고시 제128조 제1항 제3호 및 제2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
차폭등(030) 【부착 개수 관계】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미등 【부착 개수 관계】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보안기준 제39조 제1항, 세목 고시 제134조 제1항 제4호 및 제2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 기준에 적합할 것.
후부 반사기(036) 【부착 개수 관계】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세목 고시 제132조 제3항 제3호 및 제210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동등(037) 【부착 개수 관계】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보안기준 제39조 제1항, 세목 고시 제134조 제1항 제4호 및 제2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보조제동등 【장비 요건 등】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후퇴등 【장비 요건 등】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자동차가 후진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와이퍼 등 【햇빛 가리개】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설계상 또는 속도억제 장치에 의하여 30km/h 이하일 것.
방향지시기(039) 【측면 방향지시기의 장비 요건 등】	• 자동차의 길이는 2.50미터 이하일 것. • 자동차 폭이 1.30미터 이하일 것. • 【세목 고시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표의ㅁ,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3호 및 제215조 제1항 제1호 제1표의ㅁ,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 항목	기타 운행에 있어서 지방운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첨 4】 운행의 보고(제10조 관계)

양식 운행실적표 (平成 24年 月 시점)

신청자 명:

차 명: 형식:

번호	차 번호	운행지역	운행시기 (–)	주행시간 (약 시간)	주행거리 (단위: 약 km)	사용자의 소속, 이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줄, 칸을 추가해 주십시오.

(앙케이트 조사 예시)

초소형 자동차 운행(당해 자동차가 공공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교통 수단 및 보행자 등에게 영향을 미친 사항)에 있어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한 조사

(기입자 소속 · 이름 :)

Q 1 공공도로 주행 중에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나 차량의 고장 등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해 주십시오.

Q 1-1 공공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있었던 경우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Q 1-2 공공도로 주행 중에 당해 자동차의 탑승자 또는 주행자 등이 사고에 이르기 직전까지 간 경우에 대하여 사고에 이르기 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다면 피해자 측, 가해자 측, 단독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Q 1-3 차량(초소형 자동차)의 고장 유무에 대하여 고장이 있었다면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Q 1-4 교통 안전의 확보 등 보행자 및 다른 교통에서 배려하고 있는 점을 전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예) 주행에 관한 주의 환기, 안전 확보에 대한 확인 사항, 주행 시 유도원 배치, 간판 설치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Q 2로

Q 2 공공도로 주행에 관하여 파악한 사용자(당해 자동차 이용자)의 의견이나 주변 주민 등으로부터의 고충 등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Q 2-1 사용자(당해 자동차 사용자)로부터의 의견, 감상 등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Q 2-2 주변 주민으로부터의 고충, 감상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Q 3로

Q 3 이후(장래)의 공공도로 주행에 있어서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Q 4로

Q 4 이후(장래)의 계획(도입 예정의 차량을 포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1호 양식(제5조 관계)

초소형 자동차 등록 신청서

年 月 日

지방운수국장 앞

신청자 이름 또는 명칭 (인)
주 소

아래의 초소형 자동차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제55조 제1하의 규정에 기초하여 초소형 자동차 등록 인정을 받고자 하므로, 별첨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記

1. 차명 또는 형식
2. 종류 및 용도
3. 차체의 형상
4. 차량 번호(또는 제조 번호)
5.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주소
6. 운행 지역
7. 등록에 의한 적용을 제외하는 보안기준 조항 및 내용
   (별첨 2에 의한다)
8.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이유
9. 생략하는 첨부 자료

(일본 공업 규격 A례 4번)

비고

(1) 인감 대신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인) 란에 서명을 한다.
(2) 형식에 관하여는 필요에 따라 유형별 구분 번호를 기재한다.
(3) 차량 번호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제조 번호를 기재한다.
(4)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사용 조건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5) 동일 차명 또는 형식의 초소형 자동차를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記 4」를 별지로 기재할 수 있다.
(6) 「記 9」를 생략하는 첨부 자료에 관하여는 차명, 형식이 다른 초소형 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생략하는 첨부 자료의 명칭을 기재한다.

제2호 양식(제5조 관계)

초소형 자동차 등록 변경 신청서

年 月 日

지방운수국장 앞

신청자 이름 또는 명칭 (인)
주 소

아래의 초소형 자동차에 관하여,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별첨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記

1. 초소형 자동차 등록 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차명 및 형식
3. 종류 및 용도
4. 차량 번호
5.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6. 변경 연월일

(일본 공업 규격 A례 4번)

비고
인감 대신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인) 란에 서명을 한다.

제3호 양식(제7조 관계)

초소형 자동차 등록 인정서

번　　호
年　月　日

앞

지방운수국장

平成　年　月　日자 신청을 아래의 초소형 자동차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인정한다.

記

1. 차명 또는 형식
2. 종류 및 용도
3. 차체의 형태
4. 차량 번호(또는 제조 번호)
5.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주소
6. 운행 지역
7. 기준완화하는 조항 및 조건 또는 제한

(주의사항)
등록과 관계되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필요한 보안상 또는 공해방지상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인정을 취소한다.

(일본 공업 규격 A례 4번)

제4호 양식(제7조 관계)

번　　호
年　月　日

운수지국장 앞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장 앞
경자동차검사협회 사무소장 앞
사무소지소장 앞
사무소분실장 앞

지방운수국장

초소형 자동차 등록 통지에 관하여

표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초소형 자동차 등록을 인정하므로, 초소형 자동차 등록 인정서 사본 및 신청서 등의 부본을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증의 비고란에는 별지 등록 인정서의 사본에 기재한 아래 記1 및 「7 기준완화하는 조항 및 조건 및 제한」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記

1. 초소형 자동차 등록 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차명 및 형식
3. 차량 번호
4. 자동차 검사증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할 조건 및 제한
   (별첨 3의 내용 중 필요한 것)

제5호 양식(제9조 관련)

초소형 자동차 등록 취소 신청서

年 月 日

지방운수국장 앞

신청자 이름 및 명칭 또는 주소	(인)
등록 번호 등	등록 번호 등록 연월일
차명 및 형식	
차량 번호	
종류 및 용도	
취소 이유	
비고	

(일본 공업 규격 A례 4번)

참고 (별첨 1 관계)

(초소형 자동차)　　年　月　日

지방운수국장 앞

신청자 이름 또는 명칭　　(인)
주　　소

서　약　서

사용하는 차명　　, 형식　　, 차량번호(또는 제조번호)　　의 초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초소형 자동차 등록 신청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신청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1. 등록시 붙인 조건 또는 보안상 및 공해방지상 제한을 준수합니다.
2. 운행에 있어서 도로운송차량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3. 1.에 위반한 때에는 초소형 자동차 등록 취소처분 등을 받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4. 사고시에는 지체없이 통보하겠습니다.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당해 초소형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초소형 자동차 등록 취지에 대하여 알립니다.

(일본 공업 규격 A례 4번)

비고
(1)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협의회의 장이다.
(2) 인감 대신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인) 란에 서명을 한다.
(3) 차량 번호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제조 번호를 기재한다.
(4) 동일 차명 E는 형식의 초소형 자동차를 복수 신청하는 때에는, 「차량 번호」(또는 제조번호)를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